

## 산학협력단

수신자 전기관(학과(부))

(경유)

제목 [중요]수입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및 허가·등록·등록면제 안내

- 1.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'화관법') 및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'화평법')이 시행됨에 따라,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, 환경청에 허가·등록·등록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.
  - ※ 미 이행시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 가능
- 2. 이에 따라, 산학협력단에서는 수입 화학물질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,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 및 허가·등록(등록면제)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후 [붙임1]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확인명세서 제출 및 허가·등록·등록면제 신청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는 해당 연구 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함

구분	<b>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명세서(성분명세서 포함)</b> 제출을 요하는 화학물질	환경청 허가 신청·환경청 시스템 등록(또는 등록면제) 요하는 화학물질
대상	수입되는 <u>모든 화학물질</u> (단, 확인명세서 제출 비대상은 예외: [붙임2] 참조)	수입되는 <b>모든 화학물질 중,</b> 1. <u>금지물질</u> 2. <u>신규화학물질</u> 3. <u>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중 1톤이상 수입물질</u>
SRnD 처리	SRnD 관세감면/수입대행 신청 시 화학물질인 경우, '물품명'에 <u>CAS번호를 반드시 기재</u> 하고, '물품구분' 중 해당 구분을 반드시 선택 후 [붙임1] 매뉴얼 31 페이지에 기재된 필수서류를 SRnD에 업로드 ※ SRnD 물품구분: '화학물질(확인명세서)'에 업로드	SRnD 관세감면/수입대행 신청 시 화학물질인 경우, '물 품명'에 CAS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, '물품구분' 중 해당 구분을 반드시 선택 후 [불임1] 매뉴얼 31페이지에 기 재된 필수서류를 SRnD에 업로드 1. 금지물질 - 금지물질 수입허가신청서 작성 후 SRnD에 업로드 ※ SRnD 물품구분: '화학물질(확인-금지물질)'에 업로드 2. 신규화학물질 및 3.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중 1톤이상 수입물질 - 환경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(https://kreachportal.me.go.kr)에 등록(또는 등록면제) 완료 후 신청 접수증을 SRnD에 업로드 ※ SRnD 물품구분 '화학물질(확인-등록대상)'/'화학물질(확인-등록면제)'에 업로드
공통	1. 확인명세서(성분명세서 포함) 제출 비대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, 제조사로부터 성분명세서를 받아 [붙임1] 매뉴얼 7페이지의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SRnD 관세감면/수입대행 신청 시 업로드 ※ SRnD 물품구분: '화학물질(확인명세서)'에 업로드 2. 허가·등록(또는 등록면제) 물질인지 여부 확인: 환경청 <u>화학물질정보시스템(http://ncis.nier.go.kr)에서 검색가능하며,</u> [불임1] 매뉴얼 14페이지 참조	

- 붙임 1. 수입 화학물질 관련 업무 매뉴얼 1부.
  - 2.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비대상 목록 1부.
  - 3. 수입 화학물질 관련 양식 모음 각 1부. 끝.

## 서 울 대 학 교 산 학 협 력



팀장(대) **한지선** 부장 **박상남** 본부장 **이재선** <sup>산학협력정책부</sup> **이미옥** 

**05/16** 단장 **김성철** 

협조자 팀장 **송나영** 부장 **홍성애** 

선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-108840 (2018.05.16) 접수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-2068 (2018.05.16.)

우 151-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36동 308호 /

전화 02-880-2047 전송 02-888-2029 /hjs1221@snu.ac.kr / 공개